

中小企業 事業轉換 支援要領

資料提供：商工部 中小企業局 指導課

○商工部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中小企業이 최근의 원貨 切上 등 諸般競争 여건의 변화를 새로운 사업으로의 전환이나 업종의 다각화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극복하고 원활한 構造調整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中小企業 事業轉換 支援要領을 告示하여 '88. 8. 5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 '88. 6. 22 발표된 「'88 下半期 中小企業 特別支援對策」의 후속조치로서 사업전환에 따르는 지원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中小企業이 事業轉換을 용이하게 하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同 告示의 主要内容은 다음과 같다.

-事業轉換의 적용범위를 업종전환(기존설비를 폐기 또는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완전전환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總売上額의 70% 이상인 경우) 뿐만 아니라, 업종의 다각화(기존업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總売上額의 30% 이상인 경우)까지 포함시킴으로서, 中小企業者의 事業轉換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다. (다만, 업종전환의 경우에는 후술하는 資金 및 租稅減免 지원이 있으나, 업종다각화의 경우에는 資金支援 혜택만이 있음.)

-事業轉換 支援對象業種은 제조업으로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이미 告示한 우

선육성업종 및 지정계열화 업종을 제외한 업종과 事業轉換審議委員會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로 하고 있다. 현재 韓國標準 産業分類上의 細細分類基準으로 제조업종은 522개 업종이며, 이중 우선육성업종은 모방직업등 154개, 지정계열화 업종은 컴퓨터 部品製造業等 41개 업종으로서 업종이 중복되는 것을 감안하면 169개 업종이 제외된다.

-事業轉換 사업의 주관은 中小企業振興公團이 되며, 앞으로 同 公團內에 설치될 事業轉換審議委員會에서 업체별로 신청된 事業轉換 계획을 종합검토하여, 승인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施設資金 및 運轉資金을 지원하며, 아울러 事業轉換時 발생하는 시설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法人稅, 特別附加稅 또는 讓渡所得稅 減免의 혜택이 있고, 創業支援法上 요건에 합당하는 경우에는 創業支援 차원에서 金融, 稅制上 支援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支援內容

(1) 事業轉換 資金支援：200億원

구 분	동일업체에 대한 한도	금 리	상 환 기 간
시설자금	3억원	9%	8년(3년거치 5년분할)
운전자금	1억원	9%	3년(1년거치 2년분할)

(2) 사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실직자 雇傭訓練支援(勞働部)：10億원

- 실직자 轉職訓練에 대한 훈련수당, 훈련수강료 등 財政支援
 - 技能訓練時 事業轉換 관련 실직자 우선선정 훈련지원
- (3) 事業轉換에 따른 유휴설비 海外移轉 支援: 100 億원
- 中小企業의 海外 現物投資 또는 유휴설비 延拂 輸出 사업지원
 - 中小企業 海外投資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경비
- (4) 기타 經營 技術指導 및 정보제공지원
- 각종 國內外 情報資料 제공
 - 中小企業振興公團 지도단 및 政府登錄指導士 활용 지원

상공부고시 제88-31호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요령

구조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 최근의 제반 경쟁 여건변화를 새로운 사업으로의 전환이나 업종의 다각화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극복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8. 8. 5
상공부장관

다 음

제1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이라 함은 통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 세세분류 내에서 품목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동일업종으로 한다.

2. “업종전환”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당해업종의 사업용자산을 양도 또는 폐기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완전전환하거나, 당해업종에 세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7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업종다각화”라 함은 당해업종에 세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사업전환”이라 함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 업종전환 또는 업종다각화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사업전환지원대상업종) 중소기업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사업전환지원대상업종(이하 이장에서 “대상업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제조업으로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이미 고시한 다음 업종 이외의 업종가. 중소기업진흥법 제3조에 의한 우선육성업종
- 나.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제5조에 의한 지정계열화업종
2. 제9조에 의한 사업전환심의위원회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3조(사업전환계획승인신청자의 요건) 중소기업진흥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전환계획(이하 이장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환계획승인신청일 현재 3년이상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자
2. 대상업종의 최근 결산년도의 전업률이 매출액 기준으로 50%이상인 자
3. 기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 사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

건에 해당하는 자

제 4 조 (전환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전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진흥법시행규칙 제 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각호 서류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환계획이 중소기업진흥법시행령 제 8 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경영 및 기술진단 등을 행할 수 있다.

제 5 조 (전환계획의 실시기간) 공단이사장 으로부터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전환계획의 내용에 따라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 년이내에 사업전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6 조 (지원) ① 공단이사장은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지원 및 시설의 대여
2. 경영 및 기술지도
3. 주식 및 사채의 인수
4. 기술개발 및 기술도입지원
5. 연수 및 정보의 제공
6. 해외기술협력 알선 및 해외진출 지원
7. 사업전환에 따른 종업원의 전직훈련지원 등

② 업종전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 45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이 된다.

제 7 조 (전직훈련 우선실시 등) 공단이사장은 사업

전환을 하는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용이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전직훈련에 필요한 종업원연수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8 조 (사후관리) ① 공단이사장은 중소기업진흥법시행령 제 10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실적서를 제출받아 추진성과를 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익년도 3 월 이내에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전환계획승인업체에 대한 실태파악 및 사후관리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9 조 (사업전환심의위원회설치 등) ① 공단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고 제 2 조 제 2 항의 규정에 대한 대상업종을 선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내에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 인을 포함하여 10 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단이사장이 지정하는 공단의 임원이 되고, 위원은 정부관련부처장이 지정하는 4 급공무원과 금융기관 등 지원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중에서 공단이사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